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7가단2090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강현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형·사출시설 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장비사용료 및 시설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C은 2015. 10. 13.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라고 주장하며, C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자동차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는 2018. 10. 11. 조정예 회부되었다(이 법원 2018머117345). 2018. 12.14. 14:00 열린 위 조정사건 제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진행 중인 대전고등법원 2018나14524 사해행위취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의일(2019. 3. 22. 예정, 기일 변경 시 변경된 조정기일)로부터 1달 이내에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피고들은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고 B는 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조정위원과 통화하면서 위 합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 A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조정사건 조정기일은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속행되었다.

다. 관련사건에서 2020. 8.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다음날인 2020. 8.14. 열린 위 조정사건의 제7차 조정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2020. 8.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9. 14.까지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1. 27. 이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위적 청구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종전 청구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을 비롯한 관련사건의 피고들은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2651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0. 12.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관련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2020. 8.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별지목록)

자동차의 표시

1. 소유 자동차 (질 그랜드 체로키)1. 자동차등록번호 :

1. 자동차명 : 질 그랜드 체로키

1. 차종 : 승용대형

1. 차대번호 :

1. 원동기형식 : 642980

1. 용도 : 자가용

1. 모델연도 : 2006

1. 최초등록일 : 2006. 07. 10.

1. 최종소유자 : 1. 사용본거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소유 자동차 (질 컴패스)1. 자동차등록번호 :

1. 자동차명 : 질 컴패스

1. 차종 : 승용대형

1. 차대번호 :

1. 원동기형식 : C

1. 용도 : 자가용

1. 모델연도 : 2012

1. 최초등록일 : 2012. 07.19

1. 최종소유자 : 1. 사용본거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이 상 -